

(시 이름)의 통지
제504절 담당자와 고충 처리 절차

1973년 재활 조례의 제 504절 및 그 보완 규제(“제 504절”)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은, 그/그녀의 장애만을 이유로,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참가를 배제 당하거나, 혜택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 이름)는 시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의 접근, 참여, 대우, 또는 고용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시 이름)의 제 504절 담당자는 (이름을 입력)입니다. 담당자는 다음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팩스 및 이메일을 포함한 연락 정보 입력)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을 받거나, 동등한 기회나 접근이 부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고충(grievance)이라 칭할 것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제 504 절 담당자

연락 정보)

또는



U.S 주택 및 도시개발부
FHEO/제 3구역 사무소 중부 대서양 사무소
100 Penn Square East, 12th Floor
Philadelphia, PA 19107
(215) 861-7643
팩스: (215) 656-3449
TTY: (800) 927-9275

또
는

U.S. 주택 및 도시개발부
PITTSBURGH 공정 주택과 평등
기회 현장 사무소 Moorhead
연방 빌딩

1000 Liberty Avenue
Pittsburgh, PA 15222
(412) 644-5449 또는 (412) 644-6353
팩스: (412) 644-6516
TTY: (800) 927-9275

(시 이름)의 사무소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충 처리 절차와 불만 신고 양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 방법과 연락 정보 나열) 모든 장애인들과 필요하다면, 제한된 영어 구사자 시민들의 접근에서의 필요를 유념하십시오.

참고: 양수인들은 이 통지가 장애가 있는 모든 개인들과 필요하다면 제한적 영어 구사자에게 반드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는 곧 이 통지를 알리는 다른 방법을 의미하는 것 및/또는 다른 언어로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